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학급 증설이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증설·증원분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필요하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19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용기본재산 추가 확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제17조 제2항 신설).
- 나. 1997년 이전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함(법률 제15483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중 제정법률 부칙 제3조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증설·증원에 수반되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률 제15483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중 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생략)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증설·증원에 수반되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률 제15483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중 제정법률 부칙	법률 제15483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중 제정법률 부칙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 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 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 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 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 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 ----- ----- ----- ----- ----- -----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 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신설>	----- ---.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 해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 기준령이 이 영에 비하여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 문	소관부서	연락처
제17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 203 - 6535
법률 제15483호 부칙 제3조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203 - 6441